

입법정책정보

-제25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1
1. 지방공기업법	1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3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8
1.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
2.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10
3. 서울특별시 지역중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13
4.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17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19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24
V.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6

| 상위법령 제 ·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55호, 2025. 1. 7.,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지방공사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사 임직원 채용시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60조의 제목 “(임원의 결격사유)”를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다”를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를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임원”을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

지방공기업 [법률 제20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지방공기업 [법률 제20655호, 2025. 1. 7. 일부개정]
<p>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 6. (생략)</p> <p>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p>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0701호, 2025. 1. 21.,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01호, 2025. 1. 21. 일부개정]
<신 설>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 시설의 개발·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시행 2023. 10. 06.] [대전광역시조례 제6125호, 2023. 10. 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일정비율 보다 강화된 의무 구매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시설)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1.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4조의3(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

제4조의4(충전시설의 수량 및 설치 세부사항) 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5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에 2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기수가 5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5(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경우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6(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시장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3. 충전기 등 설치 및 지원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125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01. 20.] [경기도조례 제8292호, 2024. 01. 20., 제정]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대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통한 도민 의식 개선

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시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및 시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5. 01. 02.] [경상남도조례 제5788호, 2025. 01. 02., 제정]

□ 제정이유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천 682개소(국가·지방하천 포함)를 보유한 지역으로 향후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복원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3. “수생태계”란 공공수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수변지역의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생물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하천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수생태계 복원계획) ① 도지사는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상

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의2에제1항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관련 담당부서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수질, 수생태,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질, 수생태,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순위 선정) 도지사는 다음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실적보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승인·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현저한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25. 1. 2.>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제5조 재정지원은 이 조례 제정 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례 시행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후관리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01. 03.] [서울특별시조례 제9446호, 2025. 01. 03., 제정]

□ 제정이유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 또는 일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2. 시민을 위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영상물 제작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 사업

4. 지역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5.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
 6.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
 7.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한 경비를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가 정지된 경우

제9조(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446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시행 2025. 01. 20.] [경기도조례 제8327호, 2025. 01. 20., 제정]

□ 제정이유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철도 환경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철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기도 철도안전 주간 운영)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28일 시행 중인 “철도의 날”로부터 1주년을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철도안전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 기념 행사
2. 각종 철도안전 문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철도안전 시행계획) 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철도안전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철도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철도 이용객의 안전의식 수준 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안전지원사업) 도지사는 철도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안전사업 개발
2.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3. 운행장애·철도사고 관련 철도 안전 관리체계 구축
4. 운행장애·철도사고 관련 대외 협력 강화
5. 철도안전 지원을 위한 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철도안전 정보관리 등) ① 도지사는 철도안전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철도안전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도지사는 철도안전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안전을 위하여 철도시설 및 철도운영을 추진하는 시군,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5-0002 / 요청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의뢰안건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지리산에 대하여 그중 한 지방자치단체인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지리산에 대하여 그중 한 지방자치단체인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그에 관한 기념행사를 하는 사무가 산청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산청군에서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려는 취지는 지리산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술·문화·예술 및 농·임산물의 판촉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산청군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제4호)’ 또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제5호)’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는 산청군 소관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리산’은 산청군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참조), 산청군에서 ‘지리산’과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를 ‘지리산의 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먼저 지정한다 하더라도 산청군과 동일한 지리적 특성을 갖는, 즉 ‘지리산’과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만약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청군과 다른 날짜에 ‘지리산의 날’을 지정한다면 동일한 명칭과 목적의 기념일과 기념행사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다른 날짜에 지정·운영되어 당초 산청군에서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려는 목적과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청군에서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리산’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기념일 지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 특정 날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주: 법제처 2019. 3. 13. 회신 의견제시 19-0053; 법제처 2011. 10. 28. 회신 의견제시 11-0238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너. (생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생략)
- 6.·7. (생략)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435 / 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의뢰안건

개정 「고성군 건축 조례」(2022. 9. 21.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조례 제26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조례 시행 이후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이후 해당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 시행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개정 「고성군 건축 조례」(2022. 9. 21.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조례 제26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조례 시행 이후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이후 해당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 시행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지(각주: 해당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개정 「고성군 건축 조례」(2022. 9. 2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26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고성군조례”라 한다)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정고성군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고성군조례 시행 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이후 해당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고성군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는 당시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 처분 당시의 법령등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처분시법주의의 예외로서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법령등을 개정하면서 부칙 규정에 종전의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2021)』, 156쪽, 법제처 2024. 6. 12. 의견제시 24-0101 참조), 이 사안에서 개정고성군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이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하는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란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인데, 개정고성군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의 경과조치는 같은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법률관계에 의해 형성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경과조치 규정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허가를 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허가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의 적법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변경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와 다른 새로운 허가라는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바(각주: 법제처 2017. 7. 3. 회신 17-0178 해석례 참조), 개정고성군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은 같은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 같은 조례 시행 이후에도 허가를 신청할 당시의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려는 취지일 뿐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고성군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변경허가에 대해서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지위를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고성군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은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는 당시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개정 「고성군 건축 조례」(2022. 9. 2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26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생략)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생략)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생략)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일본, 정치개혁 관련 3법 성립

□ 주요내용

일본에서는 24년 12월 24일, 용도공개의무가 없는 “정책활동비”를 예외없이 폐지하는 정치개혁 관련 3법(정책활동비폐지법, 정치자금감시위원회설치법,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활동비는 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정치자금규정법」(이하 “규정법”)의 재개정을 포함하는 3법은 ① 정책활동비의 폐지, ②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자기관의 설치, ③ 외국인의 정치자금행사 파티권 구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활동비 폐지

정책활동비란 정당이 소속 정치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지금까지 이를 받은 정치인 측에 용도공개의무는 없었다. 당세 확장이나 정책 입안, 조사연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투명성이 낮아 “블랙박스”라는 비판이 있었다. 여당인 자민당은 당초 외교상 기밀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방법고안지출”의 신설을 주장하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예외없이 폐지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2) 제3자기관 설치

제3자기관의 신설에는 정치자금 전반의 용도를 감시하는 목적이 있다. 국회에 “정치자금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감시에 필요한 자료 또한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은 양원의 합동협의회가 추천하고, 양원 의장이 임명한다. 구체적인 체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3) 외국인의 정치자금행사 파티권 구입 금지

외국인의 정치자금행사 파티권 구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다. 규정법은 외국 세력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국인에 의한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 그에 따른 것이다.

벌칙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국인인지 알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대

해서도 상정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정 규정법에는 정치자금수지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환경 정비도 명시하였다. 수지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을 낸 기업·단체의 이름이나 지출항목별 검색도 가능하도록 한다.

[출처] 나혼게이지이 신문(2024. 12. 24)

V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 주요내용

美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인상, IRA 축소 등을 예고함에 따라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 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한편, 관세 인상 및 IRA 축소 조합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핵심 기조는 관세 인상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이다. 관세 인상을 통해 제조업·첨단산업 등 자국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관세를 통해 증가된 세수는 법인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활력 회복(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이민자 축소 등 특정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국가별 차등관세를 부과하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인상에 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대응보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앞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그에 따른 과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관세정책 방향의 변화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외국산 상품에 10~20%의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를 부과할 것을 공약하였다. 현재 미국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2.4% 수준¹⁾인데, 관세 부과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다. 선거 승리 이후에는, 불법이민과 마약밀수가 근절되지 않는 한 취임일 첫날에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어 있어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가 적용되어 왔음에도, 이들 국가에 공약에서 언급한 10~20%를 넘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공약하였으나, 당선 후에는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Additional 10% Tariff, above any additional Tariffs)를 부과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

(단위: %)

산업	FTA체결국		중국	기타 지역
	한국 등	멕시코, 캐나다		
일반기계	0.2	0.2	11.3	0.7
전기전자	0.2	0.3	9.4	0.7
자동차	0.2	0.3	23.9	2.1
화학	0.1	0.1	10.3	0.8
기타 수송	0.0	0.1	15.1	0.4
석유정제	0.1	0.1	19.9	0.2
철강	0.2	0.1	18.6	1.8
식재 및 유리류	0.0	0.0	17.8	1.6
섬유·의복	1.7	1.2	19.8	14.5
플라스틱 및 고무류	0.3	0.2	16.6	3.8
음식류	0.3	0.3	24.2	2.9
야채류	0.1	0.1	17.1	1.2
목재 및 목제품	0.0	0.0	16.2	0.9
장난감·스포츠용품	0.3	0.3	1.5	1.1
애완용품	0.0	0.0	14.2	1.9
신발류	0.6	0.5	12.9	11.2
가죽류	1.2	1.2	38.7	10.7
비금속 광물	0.0	0.0	3.7	0.0

※자료: Julieta Contreras 등, No trade tax is free: Trump's promised tariffs will hit large flows of electronics, machinery, autos and chemicals. PIIE, 2024.12.12. 재구성

2025. 1. 6.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보편적 관세 계획을 일부 핵심 품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보도2)하였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관련 보도를 부인하였다. 과격한 수입 관세가 현실의 장벽 앞에 축소·수정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세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 경제·외교 정책이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진 점을 감안할 때, 낙관적 기대보다는 상당 수준 이행될 것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최근 CNN 보도³⁾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관세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제통상규범, 국내법 등을 고려하여 간편한 절차로 행정명령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 관세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 전망

(1) 통상정책 및 세계경제에의 영향

국제통상 정책은 2차대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 1995년 WTO 출범 등을 거치면서,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보조금 제한 등 국제교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 학계와 WTO, IMF 등 국제기구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정책이 이러한 전통적 흐름과 배치되는 것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해 국제교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국의 관세 인상은 그 자체로 혹은 관세전쟁으로 연결되어 국제교역을 축소시켜 세계경제 성장을 약화하는 동시에,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분업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미국 통상정책의 예상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장기금리 상승, 수출의존형 국가 및 저소득국가의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편관세 부과는 관세인하 양허 약속, 내국민대우 등 WTO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지만, WTO 상소기구가 장기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통상정책을 다자 차원에서 제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히려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각국의 판단 하에 양자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부과 시 멕시코와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대응수단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2) 관세 인상에 따른 對미 수출에의 영향

① 가장 직접적 영향으로는 對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축소가 우려된다.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이 축소되는 것이다. ② 한편, 對3국 관세 부과에 따라 중간재 수출은 축소될 것이나, 미국으로의 대체수출은 증가할 수 있다. 예컨대, 멕시코·캐나다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對중국 고관세 부과로 우리 상품이 미국에서 중국 상품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③ 그 밖에도 3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따라 대미 중간재 수출은 축소되나 미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출 감소 폭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가정과 경로를 고려해야 하기에 구체적인 추산이 어렵다. 기관별 분석 결과에도 차이가 나는 이유이다. 예컨대, 10% 보편관세 및 대중국 60% 관세 부과 시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수출 감소 추정치는 아래와 같다.

美 관세 인상에 따른 한국 수출 감소 추정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10% 보편관세 + 對중국 60% 관세 부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출액: 226억 달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의 對미 보복관세시 총수출액 240억 달러 감소 • 對미 수출액: 152억 달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출액: 92억 달러 감소

※ 자료: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영향 분석」, 2024.10.31., 2) 산업연구원,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2024.12.27. 재구성

※ 주: 산업연구원 총수출감소액 추정치(13.48조 원)를 기관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2025.1.14. 환율(1461원)을 적용하여 환산함.

4. 대응방안

(1) 관세인상에 대한 대응

12월 중순 현재 기준으로, 우리 제품에 부과될 관세 수준은 불명확하다. 다만, 관세 인상이 일부 핵심품목에 한정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를 유추해 볼 때,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편관세 부과 후 양자 간 FTA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경로도 상정할 수 있다. 실례로, 트럼프 2기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 Howard Lutnick은 “관세는 협상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요약컨대, 우리나라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관세정책의 주요 상대국 중 하나이고, 관세 인상의 대상품목과 수준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가 지연되고 협상 여력이 생길 경우,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미 조선업 MRO 국내 추진 등 양자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LG 에너지솔루션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 등 북미 생산거점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상되는 미국의 정책경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 보다 현실감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對미 협상의 방법론

측면에서는, 미 현지에서 통상외교 관련 활동을 전담하는 ‘(가칭)통상협력대사’ 를 대외직 명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상협력대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 최소화 혹은 IRA 유지를 위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IRA 추진 이후의 對미 투자 실적을 홍보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합작 투자한 미국 기업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미국 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은 상기와 같이 실용적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제통상 협상 현장에서는 보다 원칙론에 입각하여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자유무역 옹호 국가와 연대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system)’ 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성장한 국가이고 보편관세와 같은 과거 회귀적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수출중심 국가의 성장 기회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 인상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R&D 활동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당국은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관세 인상과 IRA 축소 조합에 따른 대응

IRA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으로, 우리 기업들도 IRA에 대응하여 북미 투자를 늘려왔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사들은 북미 생산거점을 늘려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왔고, 현대차는 금년부터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배터리 3사는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45X)’ 에 따라 AMPC 보조금을 받고 있고, 2025년부터는 현대·기아차 5종이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R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IRA보다는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IRA 축소 시 전기차-배터리-소재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기차 캐즘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IRA 전면 폐기는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으나, 법안이 폐기되지 않더라도 행정규칙상 세액공제 수혜요건을 까다롭게 변경하는 등 지원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의 화살을 피해 간 기업들도 IRA 축소로 인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예컨대, 배터리 업체나 현대차의 경우 현지 생산공장을 보유하여 관세 인상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배터리 3사는 AMPC 보조금, 현대차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 및 IRA 축소 조합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일 1) 보편관세가 부과되고 IRA에 따른 혜택이 유지되는 상황이 될 경우, 미국 내 기업들에게 이중

(二重)의 보호장치를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既 구축된 미국 내 투자 시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만일 2) 일정 수준의 보편관세가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IRA상 보조금이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될 경우, 기업은 관세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별 생산량을 탄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외투 정책 전반에 걸쳐 획기적 지원 방안(예: 비수도권 지역 법인세 감면 부활)을 강구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